

서울고등법원 2023. 3. 31 선고 2022나2022898 판결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청구]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3. 3. 31 선고 2022나2022898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18가합10416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현

담당변호사 김기태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원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연두, 박지희

변론종결 2023. 3. 10.

판결선고 2023. 3. 31.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18가합10416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①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또는 ② 피고는 원고에게 3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9.부터 2018. 12. 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이유 중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일괄하여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1쪽 제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⑦ 원고는, 피고와 G이 2018. 1.경 이 사건 공동주택 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받으면서 채권최고액을 2,000,000,000원으로 하고 자신들의 수익금을 피담보채권에 포함하는 등 투자 원금뿐만 아니라 수익금 전액의 상환을 충분히 담보하였으므로 피고와 G은 손실의 위험성을 감수한

적이 없어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대여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동주택 부지에는 이미 근저당권자 K조합, 채권최고액 2,990,000,000원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자 K조합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2018. 1.경 이 사건 공동주택 부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서상 수익금 전액의 상황이 확실히 보장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은 투자자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앞서 살핀 사정들을 함께 고려해 보면, 2018.

1.경 이 사건 공동주택 부지에 관한 위 근저당권 설정 사실만으로 피고와 G이 지급한 돈을 대여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4쪽 제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가 2018. 10. 5. 검찰 조사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 부지에 대하여 가압류 하는 것을 막으려고 J과 C에게 지시하여 법적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담보를 변경하라고 지시하였던 점’을 인정하였고, 실제로 피고는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자신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기 위하여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는 분양계약의 거짓 변경을 계획하여 실행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행위가 사회상규를 넘는 기망행위 또는 채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에 대한 2018. 10. 5.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갑 제32호증의 2)에는 피고가 당시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을 인정한다는 진술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당심 증인 C도 이 법정에서 ‘관계되는 압류 안하겠다는 서류까지 받으라고 G이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을 뿐 피고가 직접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구분건물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C를 통해 원고를 기망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자료가 없는 점(한편, 피고는 C, G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담보 제공 의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구분건물을 처분함으로써 297,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배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위 담보 제공에 관한 직접적인 의무자인 C조차도 원고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문광섭, 판사 정문경, 판사 이준현